

신고번호 제 FA22-10-0025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주)크룩스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118132887
	성명(대표자) 권금택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70-4688-4275 정문교 (전자우편 :ajflrl@naver.com)
	소재지(사업장) (07667)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26-6 은우빌딩 3층 (전화번호 :070-4688-4275) (팩스번호 :02-6499-3433)	
신고제품	제조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접착제
	제품명 순간접착제 파워드롭	용도 순간·강력용(고무용) 외 7 종
	제형 액체형	중량·용량·매수 5 g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효과·효능(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기타신고사항
기재사항 참고		기재사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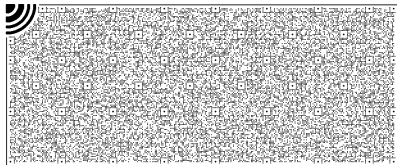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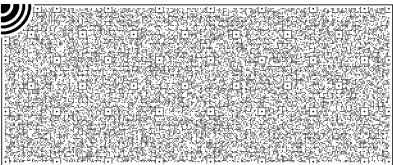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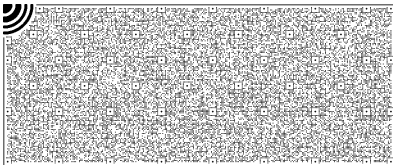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03 월 04 일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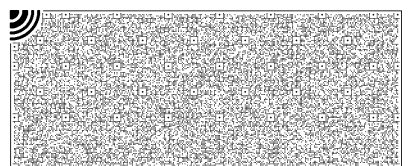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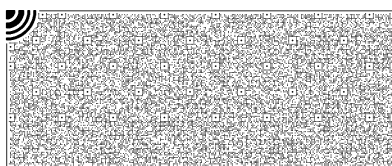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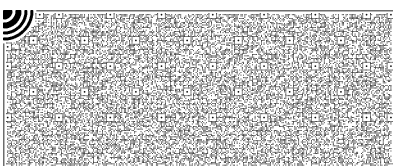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150g/㎡)]



<기재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2022.03.04	최초 대표제품 신고 - 용도: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가죽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고무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금속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도자기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목재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섬유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유리용), 접착·접합제품-접착제(순간·강력용-플라스틱용)	
2022.03.16	파생 신고 (오공 순간접착제 초스피드형) - 신고사항: □ 파생제품신고 - ㉠신고유형 변경 - ㉡제조방식 변경(변경후 : ODM (주)오공),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제품명 변경, ㉤중량 변경(변경후 : 20 g)	
2022.04.14	대표제품 변경 신고 (순간접착제 파워드롭) - 신고사항: □ 대표제품 변경신고 -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유통기한 변경,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내용 변경	
2022.04.18	파생제품 변경 신고 (오공 순간접착제 초스피드형) - 신고사항: □ 파생제품 변경신고 - ㉢신고 대상 변경 - ㉦표시도안 견본 오류 정정, ㉧시스템 입력 오류 정정(변경후 : 어린이보호포장 확약서 첨부)	
2022.04.22	파생 신고 (순간접착제 원더드롭) - 신고사항: □ 파생제품신고 -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제품명 변경,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내용 변경, ㉩응급처치 표기내용 변경	
2022.04.29	대표제품 변경 신고 (순간접착제 파워드롭) - 신고사항: □ 대표제품 변경신고 - ㉢신고 대상 정보 -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내용 변경	
2022.05.11	파생 신고 (강력순간접착제 파워드롭) - 신고사항: □ 파생제품신고 - ㉠신고유형 변경 - ㉡제조방식 변경(변경후 : ODM 롯데알미늄(주) 생활용품부문),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제품명 변경, ㉦사용방법 표기내용 변경,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내용 변경	
2022.10.21	파생 신고 (순간접착제 이큐(EQ)20g) - 신고사항: □ 파생제품신고 -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제품명 변경, ㉤중량 변경(20 g)	
2022.10.21	파생 신고 (순간접착제 이큐(EQ)50g) - 신고사항: □ 파생제품신고 - ㉢신고 대상 정보 변경 - ㉠제품명 변경, ㉤중량 변경(50 g)	

210mm×297mm[백상지(15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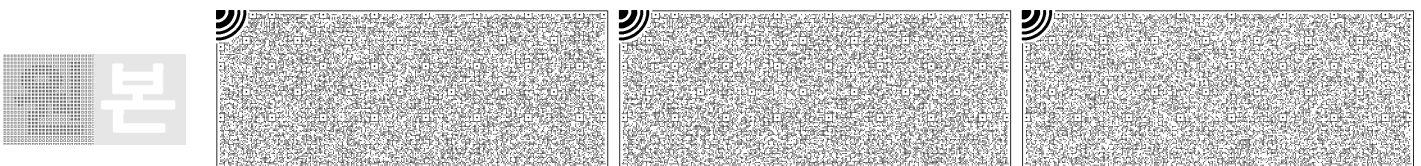


연월일	내용	확인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 >

1.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명서 표기된 신고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표시도안 견본에 표기하여 제품용기 및 전용 포장상자에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표시된 신고번호와 표시도안 견본에 표시되는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모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를 완료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II.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6.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8.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9.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10.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최초보고 : 2020년 3월 31일, 그 이후의 보고 : 최초보고

210mm×297mm[백상지(150g/㎡)]



연월일	내용	확인
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제출처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11.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상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3.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14. 화학제품안전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10mm×297mm[백상지(150g/㎡)]

